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19. . . (제 회)

의결사항

의 료 기 사 등 에 관 한 법 률
일 부 개 정 법 률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9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, 통신판매 또는 구매·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,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.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안경에 대한 구매 방법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9. 4. 25. ~ 6. 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법률 제 호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경”을 “안경[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0.0디옵터 초과 플러스 3.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(單焦點) 돋보기안경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) ① ~ ④ (생 략)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·2. (생 략) ⑥·⑦ (생 략)	제12조(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- 안경[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0.0디옵터 초과 플러스 3.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(單焦點) 돋보기안경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-----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⑥·⑦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467